

다문화 사회를 향한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태도에 관한 교의적 고찰

정 중 호* · 심 중 석**

<요 약>

본고는 성경적 시각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외견상 서로 다른 대립적 지위를 고수하고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상호 일정한 함수관계에 놓여 있는, 예컨대 ‘따로 또 같은’ 신앙적 계통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이에 가장 최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으로서 박애사상의 프리즘을 통해 다문화 사회를 향한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태도에 관한 해를 신앙적인 계도차원에서 추론한 논문이다.

본고의 체계는 이방인에 관한 성경적 시각에 법사학적 시각을 결부하여 이를 구약과 신약 그리고 현시대의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그 본원적이고도 순기능적인 이방인의 함의를 수용적(또는 계통적), 징벌적(또는 배타적) 그리고 신앙적 시각 등으로 삼분하여 구성하였다. 이로부터 현재 다문화 사회에 거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신앙적 궤도를 올바르게 곧추세움에 있어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가장 큰 계명으로서 이웃사랑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재차 각인함에 있어 일말의 단초제공을 의도하였다.

그 결과로서 교계적 차원에서 그간 해외선교에 기울여왔던 관심과 열정이 다문화 사회에 있어 내부선교의 그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행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비추어 순기능적인 시각에서 이방인을 대했던 태도에 비추어 그 격과 지향점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아, 현재 성장지향주의적 목회를 지향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전형적인 단면을 적시함과 동시에 교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선교정책적 차원에서 교회 내지 목회의 전향적 회귀를 본고의 시사점으로 부각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사회, 이방인, 종교적 구성원, 구약시대, 신약시대, 선교정책

*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기독교학과 교수(주저자), joongho@kmu.ac.kr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부교수(교신저자), cyrus@daegu.ac.kr

I. 머리말

사전적 의미에서 ‘이방인’(異邦人)이라 함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풀이된다. 달리 법률용어로서는 내국인의 시각에서 ‘당해 국가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의 ‘외국인’(外國人)에 의제되는데, 이 경우 외국인[이방인]은 법률상 내국인과 그 지위는 동일하지만, 국가의 안전이나 내국인의 이익을 수호함에 있어 필요한 특단의 권리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적 제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 영어로 이방인은 통상 ‘stranger’, ‘alien’ 또는 ‘foreigner’ 등으로 표현되는데, 이 경우 ‘alien’은 때때로 적대감을 내재한 뜻으로 그 차별성을 돋보이기도 한다. 특이할 것은 구약성경의 경우 통상 NIV에서는 ‘alien’을, KJV에서는 ‘stranger’를 다른 것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유대교 시각에서 이방인은 일반적으로 ‘그들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표창하기 위한 의도에서 자신들 이외의 이민족을 폄하하여 이르던 말’로 곧잘 사용되는데, 비유컨대 이를 우리의 경우로 치환하면, 아마도 ‘오랑캐’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구약성경에서 ‘이방인’은 통상 ‘게르’(gēr, 신 29:22)와 ‘노크리’(nākrī, 신 14:21)로 혼용되고 있는데(Mark, 2012; Mayshar, 2014; Prior, 2012; Zehnder, 2015; 오민수, 2013; 정중호, 2004),¹⁾ 양자는 공히 ‘자신이 본래 속했던 곳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거나 사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환언하면 ‘자신의 본래 고향을 떠나 온 외지인을 의미하는 단어’로서의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게르’는 ‘노크리’에 비하여 그 함축된 의미상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를 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논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 ‘게르’는 수용적인 대상임에 반하여, ‘노크리’는 징벌적[배타적] 대상임을 시사한다.

그 밖에도 ‘나그네와 떠돌이’(창 23:4; 레 25:35, 47)라는 의미의 ‘토샤브’(tōšāb)를 비롯하여 ‘게르’를 병합한 ‘게르 베토샤브’(gēr wetōšāb)라는 조합된 단어로도 곧잘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 후자는 그 의미상 ‘게르’에 의제된다. 이에 덧붙여 간혹 ‘자르’(zār)라는 용어 또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이상의 뜻과 ‘후견인이 없는 이방인’의 의미를 합체하여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된다(라이너 캐슬러, 2014).

성경을 통틀어 ‘이방’(개역개정판을 기준으로 ‘이방’, ‘이방인’, ‘이방사람’, ‘이방민족’, ‘거류민’, ‘동거인’, ‘객’, ‘나그네’ 등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단어는 약 340회(구약성경의 경우 260회 이상, 신약성경의 경우 83회 이상)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들 이방인은 어떠한 신분으로 또한 어떠한 지위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나아가 이에 상당한 법적 보호 내지 지위를 담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응답 자연스럽

1)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은 달리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한정된 지면을 고려하여 이하 해당 구절의 인용만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고도 공공연한 논점일 것이라 생각한다.

당해 논점은 이방인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선민에 체화된 이스라엘의 정체성 내지 배타성에 관한 본원적 의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이는 현재 ‘다문화’(multicultural)의 사회적 환경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을 향하여 이웃사랑에 관한 교의적 시각에서 더욱 중대한 문제일 것임을 함의한다.

본고는 이상의 논점을 배경에 두고 성경적 시각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외견상 서로 다른 대립적 지위를 고수하고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상호 일정한 함수관계에 놓여 있는, 예컨대 ‘따로 또 같은’ 신앙적 계통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이에 가장 최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기한 박애사상의 프리즘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 있어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태도에 관한 해를 신앙적인 계도차원에서 추론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이를 위해 이방인에 관한 성경적 및 법사학적 시각을 구약과 신약 및 현시대의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그 본원적이고도 순기능적인 이방인의 함의를 수용적(또는 계통적), 징별적(또는 배타적) 그리고 신앙적 시각 등으로 삼분하여 유추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로서 작금의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에 거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신앙적 궤도를 올바르게 곧추세움에 있어 나아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가장 큰 계명으로서 이웃사랑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재차 각인함에 있어 일말의 단초제공에 본고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구약시대 이방인의 지위

2.1 고대 메소포타미아 법전의 경우

오늘날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간혹 문어체 내지 단편에서만 엿볼 수 있을 뿐 실생활에서는 이미 형骸화(形骸化) 되어 사장(死藏)된 처지에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단어는 예컨대 국내에 잠시 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으로서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또는 다문화 가정) 등으로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외국인[다문화 이주민]은 사회통념상 그 사용에 있어 지리적 · 계통적 · 역사적 · 문화적 차이 등에 기한 배타적 지위를 접한다.

한편 이와 동일한 시각에서 현존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ancient mesopotamia)²⁾의 다양

2) 참고로, ‘오리엔트’(orient)라는 단어는 아시아의 동쪽 끝, 즉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하는 극동 지역을 지칭할 때 사용하거나 사용되고 있음이 통상이지만, 여기에 ‘고대’(ancient)라는 한정사를 붙여 ‘고대 오리엔트’라고 지칭하는 경우에는 ‘지리학적 용어’가 아닌 ‘역사학적 개념[용어]’으로 치환된다. 따라서 ‘고대 메소포타미아’(ancient mesopotamia) 문명의 공간적 배경으

한 법전을 참고할 때,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방인’은 그 의미상 ‘노예’[외국인]에 의제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경우 노예는, 예컨대 로마제국의 노예처럼 가혹한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아닌, 다만 신분상 최하위 계층으로서 취급되고 있는 차별적 특징이 있다. 나아가 이들 노예의 대부분은 그들 의사에 반하여 ‘전쟁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혀온 자들’로 취급되었는데, 이를테면 ‘수메르인’(sumerian)은 이들을 통상 ‘외국의 남자’ 또는 ‘외국의 여자’라고 지칭하였다(조의설, 1976).³⁾

이러한 사실은 인류최초의 성문법전으로서 ‘우르-남무(Ur-Nammu) 법전’(제4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17조, 제24조 내지 제25조)을 위시하여 그 유명한 ‘함무라비’(Hammurabi) 법전의 모범법전(model law)으로서 기능하였던 ‘리피트 이슈타르(Lipit-Ishtar) 법전’(제12조 내지 제17조), ‘에시눔나(Eshnunna) 법전’(제57조)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제278조 내지 제282조) 등에서 낱낱이 엿볼 수 있다(이종근, 2008; Boeckel, 2014; Kadri, 2015; Luhmann, 2012; Mallat, and Revkin, 2013).

그런데 이 경우 노예는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당해 법전 내에 그 법적 지위 내지 보호가 견고히 확립되어 있었는데, 일례로 함무라비 법전에서의 노예는 주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일할 수 있었고, 평민은 물론 귀족과의 결혼도 제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산의 배분도 저마다 차별 없이 보전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평민으로의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는 여지도 다분하였다.

요컨대 각양의 고대 메소포타미아 법전에 비추어 이방인[노예]은 일정한 법적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은 여하히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당시 시대적 환경에 비추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상의 의미로서 노예가 아닌, 이를테면 우리의 노비 또는 평민에 준하는, 인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였다고 평할 수 있다. 예컨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어 노예는 로마의 노예와도 같이 그들 스스로 특단의 결속적 계층을 구성하여 시민계급과의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거나 또는 기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컨대 ‘스파르타쿠스(Spartacus)의 반란(B.C.73-71)’과 같은 일련의 저항 내지 봉기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같은 평가의 단적인 예로 볼 수 있기에 충분할 것이다(Bradley, 2012).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새겨두어야 할 논점은, 당시 노예는 모든 가정에서 제한적이거나 가족의 일원으로서 수용되어 그들 또한 법의 철저한 보호아래 제국 또는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저마다의 지위를 온전히 담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King, 2014). 일

로서 ‘고대 오리엔트’(ancient orien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역사상 최초의 문명이 이곳에서 발현하였다고 하는 점을 우선 인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같은 최초 문명이 시작된 사회의 역사적 넓이를 ‘고대 오리엔트’라는 지역적 범위와 동일시하여야 한다(심종석, 2013; McIntosh, 2005).

3) 그 밖에도 노예는 동족이면서도 채무 때문에 스스로 몸을 판 자, 부모가 팔아버린 자식, 고아와 유괴된 사람들도 존재하였다(조의설, 1976).

례로 이에 상당한 인류최초의 법전 ‘우르-남무 법전’[U]과 ‘함무라비 법전’[H]상 유관조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자 노예와 결혼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와 그 남자 노예가 (후에) 그의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 남녀는 그 집을 떠나지 못할지니라(또는 추방되지 않을 것이다)”(U, 제4조)

“만약 어떤 노예가 본토인 여자와 결혼하면 그 남녀는 한 남자아이로 하여금 그의 주인을 섬기게 할지니라(곧 자유인이 된다는 의미)”(U, 제5조)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 사람의 노예 부인의 처녀성을 강제로 빼앗았다면 그는 은 5세겔을 달아서 지불할 지니라”(U, 제8조)

“만약 어떤 노예여인이 그녀의 여주인의 권위를 행사하는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그 입을 소금 1시라로 문지를 지니라”(U, 제25조)

“만약 궁정의 노예나 평민의 노예가 귀족의 딸을 아내로 맞아 그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노예 주인은 그녀의 아이를 노예로 삼지 못 한다”(H, 제175조)

“노예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부친인 주인이 이를 인지하였을 경우 본처의 아이와 동등한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H, 제170조)

“주인의 아이를 낳은 여자 노예와 그 아이는 그 주인의 사후에 해방 된다”(H, 제171조)

이에 반하여 후대의 혹자는 노예로 수용한 이방인을 ‘생명이 있는 도구’(Aristoteles, B.C.384-322)라고도 또는 ‘말하는 도구’(Marcus Terentius Varro, B.C.116-27)라고도 지칭하기도 하였으나(유원기, 2014; 차영길, 1995), 모름지기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어 노예는 필자의 견해로써 ‘계통이 다른 인간’으로 표현하기에 무리가 없을 만큼 앞선 그것들과 다르게 법의 보호가 깊숙이 미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실존적 의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고대 메소포타미아 법전에서 엿볼 수 있는 이 같은 이방인[노예]에 관한 인본사상(人本思想)은 구약성경의 기록에도 다름없이 융해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는데, 구약성경의 기록과(출 12:49, 22:21, 23:09; 렘 07:06, 22:03; 수 08:33; 왕상 08:41-43; 대하 06:32-33; 사 56:06-07) 이하 함무라비 법전상의 기록은 이에 대한 단적인 예표로 취급하기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본다.

“... 공의가 지상에서 흥하게 하고 사악과 부정을 타파하며, 약한 자를 강한 자의 압제에서 풀어 주고 백성을 Shamash와 같이 의롭게 다스리며, 지상을 광명하게 하고, 인생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Anu와 Enlil께서 존귀한 왕자요⁴⁾ 수신(水神)의 경외자인 나

4)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반 잡신(雜神)에 관한 상세는 심종석, 전게서, 314-331면.

(Hammurabi)를 부르셨느니라 … ”

“ …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판결을 행하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공의를 베풀기 위하여 나는 나의 엄중한 말[법률]을 내 비(碑)에 기록하여 ‘의의 왕’(king of righteousness)인 나의 초상(肖像) 앞에 세웠노라”

“억울한 일을 당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왕인 나의 초상 앞에 와서 나의 엄중한 말을 상고할지니, 나의 비문이 그에게 가르침을 주어 그의 소송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기를 원하며, 그리함으로써 그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정의를 곧추세우기 위해, 악한 자를 멸망시키기 위해,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지 않도록,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부여하기 위해서 … 나의 귀중한 말씀을 비에 기록하여 …”[함무라비 법전 전문(preamble)].

2.2 구약성경의 경우

2.2.1 이방인의 어원

구약성경에서 이방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 ‘게르’와 ‘노크리’로 양분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 경우 전자는 ‘자신의 집을 떠나 친척도 소유지도 없는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던 사회적 약자들’로 설명된다(Mark, 2015; 소형근, 2015).

구약성경 신명기에서는 ‘게르’를 이스라엘이 부조(扶助)하여야 할 사회적 약자 그룹 중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매 3년마다 바쳐야 하는 십일조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게르)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칠칠절에도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이 함께 즐거워해야 하며, 분쟁이나 소송에서도 고아나 객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음은 이를 증한다(신 14:28-29, 16:14, 24:17, 26:11-12).

이스라엘이 이방인으로서 ‘게르’를 부조하여야 하는 당위에 관하여, 일설은 이들이 ‘거주 이방인’이면서 ‘개종자’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Mark, 2015). 곧 ‘게르’는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유일신관에 순응한 자’로, 이 경우 ‘개종자’는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에 임했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인이었음을 들어 이에 당해 부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개종자’로서 ‘게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어, 그들과 동등한 신분과 자격을 향유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들 ‘게르’에게 호의적 자세를 견지하게 되는 이유로서 기능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노크리’는 이스라엘에게 해악을 끼쳤던 이방인으로 통칭되는데, 이 경우 ‘노크리’는 ‘낯선 사람’, ‘이방인’, ‘타국인’ 등에 의제된다. 일설은 ‘노크리’는 통상 ‘비이스라엘인’을 지칭하며(삿 19:12; 왕상 8:41), 동시에 ‘타국인’(신 17:15)이나 ‘이방 땅’(출

18:03), ‘이방 여인’(왕상 11:01, 08)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본설을 수용할 경우 ‘노크리’는 ‘게르’와는 달리, 이스라엘 내에서 여하한의 법적 보장과 권리로부터 도외시되어 있는 자들로서 그 배타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Mark, 2015; 소형근, 2015).

‘노크리’에 관한 구약성경의 기록으로서, 이스라엘은 면제년에 동족에게는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지만 노크리에게는 빚을 독촉할 수 있다는 기록, 노크리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도 이스라엘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록, 솔로몬 왕은 노크리 여인들을 사랑한 것으로 인해 포로 이후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신랄한 비난을 면치 못했다는 기록, 이스라엘은 노크리를 통치자로 세울 수 없다는 기록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신 15:03, 17:15, 23:20; 왕상 11:01; 느 13:26-27). 요컨대 노크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계해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여하히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라 본다.

2.2.2 수용적 지위

구약성경에서 아므라벨(*Amraphel*)을 바빌로니아(*Babylonia*) 함무라비와 동인으로 취급할 경우(창 14:01, 09) 당시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아무르(*Amorite*) 왕조 예하의 바빌로니아인(*Babylonian*)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시대상황에 비추어 한 가정에 보통 2~5명 정도의 이방인으로서 노예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통례라 할 때(조의철, 1976), 성경의 기록에서 상당한 재력가로서 묘사되고 있는 아브라함이 보유한 노예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창 13:01-06).

이 경우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 당시 ‘이방인’은 총 3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공히 ‘외국인’으로 치환할 수 있는, 곧 비혈통적 개념을 함축한 의미로서 그 수용이 가능하다. 기록에 비추어 하나는 애굽을 묘사한 이방[창 15:13, (*nākrī*)]으로, 그 밖의 것은 외국인을 지칭하고 있는데[창 17:12, 27, (*gēr*)], 여기서 후자의 경우로서 ‘이방사람’[‘foreigner’(NIV), ‘stranger’(KJV)]을 공히 샅을 치루고 매수한 노예[이방인]로 취급하기에 무리가 없다면, 이들 이방인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보장하고 있는바 그대로의 법적 지위를 다름없이 향유하였을 것이라 본다.

그런데 이 같은 비혈통적 개념으로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소위 선민의식과의 극단적 대립을 통해 적대적 대상으로 그 지위를 변모하기에 이르는데, 이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실례가 소위 요나의 ‘박닝쿨 사건’에 관한 기록(온 03-04)이라고 할 수 있다(김광열, 2013).

주지하듯 당시 요나는 선민의식을 앞세워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를테면 극우주의적 일면을 엿보이기도 했는데, 모름지기 당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것이 앗수르(*Assyria*)를 향하신, 곧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라고 할 때,

이는 선민의식에 대립하는 이방인의 지위를 엿볼 수 있는 단초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심종석, 2011).

그렇다면 구약성경의 기록상 이방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노예제도에서의 신분상승에 준하는, 환언하면 선민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왕상 08:41-43; 대하 06:32-33; 사 56:06-07). 이 경우 ‘일정한 조건’이라 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회심에 기한 ‘이방인의 결단’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후자의 경우 이방인으로서 룻의 결단(룻 01:16-17)이 그 모범일 것이라 본다(성명옥, 2012; 정중호, 2012).

2.2.3 정별적 지위

구약성경의 기록을 조명할 때, 가나안과 동일시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 공의의 결과로서 진멸(殄滅)은 그 어의(語義)에 비추어 나아가 앞서 본 수용적 지위에 비추어 실로 가공할 만하다(신 07:02).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방인은 이처럼 때로는 ‘수용’이라는, 때로는 ‘진멸’이라는 극단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의문은 더욱 공공연할 것이라 본다.

생각건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방인을 진멸의 대상으로 선언하신 것은 모름지기 그들의 ‘관영한 죄’ 때문이라고 본다. 이 경우 관영한 죄의 핵심은 ‘음란’(lechery)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서 ‘음란’은 ‘우상숭배’(idolatry)와 그 격을 같이 한다. 대홍수(창 06-08),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참상(창 19)과 마찬가지로 이는 진멸의 결정적 동인이었음을 시사한다(출 34:15-16; 레 20:05-06).

요컨대 공의의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으로서 진멸은 음란[관영한 죄]으로부터 그 당위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인바,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당해 선언은 관영한 죄의 주체로서 이방인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들 영토의 진멸을 포함한 광의적 의미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에 의한 침략과 응전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건국과정을 포함하여 이후 역사에서의 진멸 또는 멸망의 예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에 기한 추상같은 명령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방인은 진멸의 대상으로서, 곧 음란[죄]과 동일시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를 증할 수 있는 구약성경의 기록은 앞서 언급한 ‘대홍수’,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외에도 ‘이삭의 혼사를 위한 아브라함의 처사’(창 24), ‘에서가 취한 이방인 아내’(창 27), ‘비느하스의 결단’(민 25), ‘레위인의 전가의 보도’(출 32), ‘솔로몬의 가정사에 관련된 사건’(왕상 11) 등을 포함하여 부지기하게 예시할 수 있다(이에 후보할 수 있는 기록으로는 신 31:16-18; 겔 06:09-14, 23:28-49 등).

2.2.4 소결 : 신앙적 함의

화제를 거슬러,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신화는 대개 신본주의(神本主義)를 기반으로 인간을 착취의 대상, 곧 압제의 대상으로서 노예의 신분을 덧씌우기 위함에 그 연원을 두고 있음이 통레이다(김구원, 2013). 이에 반하여 구약성경에서는 그 격을 현격히 달리 하여 주지하듯 인간창조의 이유를 ‘복의 근원’에 두고 있다.

구약성경에 비추어 최초의 인간 아담이나, 시나이 반도를 유랑하던 이스라엘이나, 본토에 거한 남북국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여하히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조물로서 그들은 생래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그들의 의사에 기하여 결정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같은 저들의 사정을 딱히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일러주셨기에, 그것이 곧 ‘율법’(律法)이었다고 본다. 이 경우 율법은 크게 작위와 부작위한 명령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하라는 것’(작위적 명령)과 ‘하지 말라’(부작위적 명령)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조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따먹지 않았으면 되었고, 지키면 되었고, 절하거나 섬기지 않으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양의 절기를 지켜 행하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들의 사랑에 기뻐하실 수 있었던 손바닥 뒤집듯 손쉬운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나아가 지루하다시피 이 같은 손쉬운 방법에서 일탈하여 그 사랑에 배반의 칼을 들이댔기로, 급기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들의 조물주마저도 가차 없이 처단하고야 마는 폐약을 저질렀던 것이다.

생각건대 그 폐약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통해 이방인이라 칭하시고 공의의 칼을 들어 진멸코자 하셨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이 편하하고 배척하기 일쑤였던 이른바 이방인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었고 그 사랑에 거하고자 안타깝게 애썼던 이방인이 곧 선민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야 마는 우를 범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 결과는 인류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야 마는 다름 아닌 ‘진멸’이었다.

그렇다면 남겨진 것은 “수용적 지위를 보전할 것이냐”(게르의 선택) 그렇지 않으면 “징벌적 지위를 고수할 것이냐”(노크리의 선택)의 선택일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일정한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한 특단의 회심과 결단을 함의한다.

Ⅲ. 신약시대 이방인의 지위

3.1 로마법전의 경우

로마의 노예[이방인]제도의 사상적 모토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ēs*)의 노예관(奴隸觀)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당해 사상의 핵심은 노예제도가 국가존립의 필수요건이라는데 있다.⁵⁾ 물론 “신은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했다. 신은 아무도 노예로 하지 않았다”(God has left all men free; nature has made no man a slave)는 자연법상 인간론이 주창되기도 하였으나[알키다마스(*Alcidamas*)], 이는 명목상 허울에 불과하였다(Gallagher, 2014; Bury, 1975).

당시 이방인은 소유자[주인]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물적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분적 지배권에 기하여 징계·처벌권의 행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유기·훼손·살해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⁶⁾ 이러한 주인의 권리는 전쟁에서 정복자[주인]가 사로잡은 포로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목숨을 살려 주었으므로 노예의 생명과 신체는 순전히 구명자(求命者)로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기본인식에 근원을 두고 있었다.

또한 당시 이방인에 대한 물적 침해는 주인의 인격권 내지 재산권침해로 보아, 이를테면 제3자가 노예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 주인에게는 ‘재산침해’(damnum iniuria datum)를 기수요건(既遂要件)으로 ‘불법행위소권’(actio iniuria)이, 이방인에 대한 모욕·비방·중상 등의 경우에는 주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주인에게 ‘인격침해소권’(actio iniuria)이나 ‘비방소권’(actio caluminae) 등의 권리행사가 각각 용인되었다(Espinoza, 2012; Gower, and Visser, 2013).

그러나 이러한 소권의 목적은 이방인 그 자체의 보호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주인을 보호하려는데 법적 실익을 두었다. 이와 같이 제정로마시대 이방인은 주인권의 남용으로부터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생존권은 일체 주인의 손에 붙여져 있었다.

한편 당시에도 실체법으로서 ‘노예보호법’(奴隸保護法)도 존재하였으나, 이 또한 그 목적상 이방인의 인도적 처우나 법률상 또는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이 아니었고, 다만 이방인의 잔인한 처벌방법을 제한하여 사회·윤리적 법감정을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함에 본연의 취지를 두고 있었다. 비유컨대 동법은 가사 지금의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김덕기, 2012; 현승중, 2004).

3.2 신약성경의 경우

3.2.1 배타적 지위

5) 당해 로마법의 인정범위는 신약성경과 그 맥을 같이 하여 기술편의상 기독교 공인이전으로 한정한다. 나아가 이하 ‘노예’라고 함은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혀온 자들로서 앞선 내용에 준하여 달리 일컫지 않는 경우 이하 ‘이방인’이라고 통칭한다.

6) 이 경우 훼손·살해는 주인의 자손행위(自損行爲)로 취급되었다.

구약성경을 통해 면면히 점철되어온 징벌적 이방인의 속성으로서 우상[음란] 및 우상숭배에 관한 기사는 신약성경에 이르러 현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망국적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 퇴화된 당시 시대상황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생각건대 이 같은 경향은 재물이 우상의 지위를 대신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본다. 그렇지만 음란은 예외 없이 ‘행위적 징벌수준’[구약]을 넘어 ‘의사적 징벌수준’[신약]에까지 그 외연이 확장되어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마 05:28, 06:24)

이에 반하여 이방(또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다름없이 예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기록의 면면을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생각되나, 다만 본고의 목적상 예수님의 추상같은 말씀에 기초한 이방 또는 이방인에 대한 기록을 배타적 지위에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 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 하였느니라 하시니 … 그들은 ‘영벌’(eternal punishment)에 …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 25:41-46)

3.2.2 계통적 지위

신약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의미는 구약의 경우에 비추어 보다 더 영성적인 의미를 지닌다. 곧 기록상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저변의 기초가 이를 증한다(이승호, 2014). 곧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최후심판의 기준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을 다름없이 사랑하여야 하는데, 이는 그들 안에 현존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된다(Houston, 201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보호자이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방인 안에 현존하고 계시기에 이방인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신앙적 행위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의 기록상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다종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배척해야 할 이방인은 그다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교도들의 행위적 정체성으로 취급되고 있는 방탕 · 부정 · 음욕 · 술주정 · 우상숭배 등은 여하히 배척되고 있다. 결국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경계하여야 할 배타적 대상은 이방인이나 이교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는 윤리적인 악이 그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한편 구약성경에서 취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처우는 대개 소극적인 수용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신약성경의 경우에는 이방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진취적 태도가 엿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이

민족·문화·언어·전통을 초월하여 사랑으로 일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요컨대 신약성경을 통해 나타난 이방인이라는 함축적 의미는 인간은 모두가 이방인이라는 시각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실존조건이 되고 있음은 유념하여야 할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앞선 말씀에 덧붙여 이방 또는 이방인에 대한 기록을 계통적 지위에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 의인들은 ‘영생’(eternal life)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 25:34-40, 46)

3.2.3 소결 : 신앙적 함의

본고 논제에 기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이 이 세상의 영원한 이방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임을 명확히 하셨다. 그 제자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떠도는 이방인의 삶을 지쳐 갔을 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 또한 저마다가 이 세상의 이방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이방인의 삶을 지쳐갔다.

인간으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하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자신이 창조한 인간으로부터 죽임까지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의 삶을 이방인의 지위를 버리지 않으시고 되레 이방인을 찾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모든 인류와 일치를 이루시길 갈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수난과 부활을 통해 한결같은 이방인으로서 자신과 우리를 일치 시키기에 공생애의 전부를 다하셨다고 본다. 이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처처에서 여실히 엿볼 수 있다(행 11:17-18, 13:47-48; 롬 03:27-30, 15:09-12).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이스라엘에는 매우 다양한 민족들이 거하고 있었다. 유대인·사마리아인·팔레스타인인·로마인을 비롯하여 서로서로가 이방인으로 뒤섞여 있었음은 물론, 이스라엘인으로서도 유대교 종파에 따라 바리새파(pharisee)·사두개파(sadducees)·열혈당원(zelotes)·에세네파(essenes) 등으로 분립되어 있었다. 나아가 자유인과 노예 및 율법학자를 포함한 지도층·창녀·세리·나병환자 등의 소외계층 또한 존재하였다(김명현, 2012). 이 같은 다양한 부류의 계층과 신앙 그리고 삶의 형태를 지닌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배타적 이기심에 기하여 다른 부류[이방인]의 삶의 형태를 무시하거나 부인하였던 패악함은 가사 지금과 마찬가지로 달리 볼 것이 없으리라 본다.

요컨대 신앙적 차원에서 나그네[이방인]로서의 삶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때, 태곳적부터 현세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그들 살 길을 찾아 떠돌고 있는 아람인(Aramean)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신 26:05). 그렇다면 모름지기 나그네의 구속을 벗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이주를 통한 정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이 자명한 이치라 할 때, 스스로가 이방인이라는 자성적 성찰과 고백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에 의지하여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아나서는 주체적이고도 예정적인 신앙적 선택일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으로서 이주를 통한 정착의 목적은 주지하듯 앞선 기록에서와 같은 ‘영생’(eternal life)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을 형해화 시키시기에 주저함이 없으셨다. 그 존재의 당위와 가치는 물론 이에 결부된 특단의 지위를 포함하여 심지어 이방인으로 치부했던 시대별 주체들의 사상적 기치마저도 여하히 무론케 하셨다. 곧 이방인에 관한 연좌의 쇄사슬을 전가의 보도로 가차 없이 끊으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 또한 다름없이 이방인임을 자처하셨기 때문이다(마 25:35).

IV. 다문화 시대 이주민의 지위

4.1 우리나라 실정법의 경우

4.1.1 배타적 지위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2013년 기준 약 75만 명 내외로, 당해 수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이 경우 ‘다문화 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법률 제11298호)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법률 제12421호) 제2조 내지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에 한하는데, 여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2079호)에 따라 2012년 이후 혼인귀화자 이외에도 그 밖의 사유(인지 또는 귀화)에 기한 다문화 가족이 공히 포함된다.

그렇지만 국내 체류외국인(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등록, 단지체류, 불법체류, 취업, 유학 등의 사유를 포함한 외국인)은 동년 기준 약 15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같은 추계는 매년 5%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법무부, 2013).

이상의 다문화 가족을 위한 우리나라 실정법은 국가적으로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내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 협력적 사회 환경을 구축하여 국가의 총체적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한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기

위함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본고 논제에 국한하여, 당해 실정법상의 문제점 내지 제도적 장애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각양의 실정법은 외견상 다문화 가족만을 강조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적용대상을 단지 인권적 차원에 국한하여 명목상 외국인을 내국인과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시각에서 입법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전경근, 2015). 환언하면 당해 입법은 외국인을 소위 다문화가족의 틀에 가두어 그들의 처우와 지원을 명문의 규정으로 따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는 시각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언제까지나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치부하고 이후로도 치부할 것임을 함의한다.

요컨대 이상의 실정법은 ‘국적법’을 제외하고 장래 그들에게도 우리나라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적 지위를 차별하여 구분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내국인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사회통념상 배타적 인식에 대한 통렬한 적시(揭示)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나아가 현재 추계에 비추어 국내체류 외국인이 150만 명을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내국인과 결혼하여 가족을 이룬 경우가 15만 명에 달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더 이상 귀화인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통념은 배척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주민정책의 대상은 결혼이민자 가정임에도 현행 사회보장법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위를 이원화하여 다루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이상의 배척사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예증으로서 마땅히 입법상의 불비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결국 우리나라 실정법상 이주민에 대한 법적 처우는 그들이 내국인으로서의 지위를 다름없이 향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아가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반 제도적 지원과 배려 내지 순기능적 시각에서 사회적 연대감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선회가 긴요하고도 시급할 것이라 생각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4.1.2 수용적 지위

현재 국내 소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20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유혜민, 2013). 이들 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운영되는 ‘병합형 센터’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독립형 센터’로 구분되는데, 이 경우 전자는 도시형, 후자는 농촌형으로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차체에 있다.

한편 이외에도 지자체의 지원에 의한 탈북자, 농촌이주, 외국결혼이주민 등 각양의 지원센터와 법률자문, 결혼지원, 이주민의 재능기부, 인권보장 등을 위한 각양의 시민단체 또한 이와 병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 교회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눈여겨볼 수 있는데, 통계지표를 참고할 경우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를 위한 단체는 2013년 기준 270여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형태는 교회부설, 이주민 교회, 이주민 선교기관, 이주민 기관의 순이며, 그 대상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다문화가정자녀, 유학생 그리고 난민 등이다. 다만 당해 단체의 재정후원은 교회의 후원과 개인후원이 압도적이며, 교계차원에서의 노회후원이나 총회의 후원은 집계할 정도로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곧 이주민 선교는 교계차원이 아닌 전적으로 개별교회나 선교단체에 의해 그 명맥이 유지·보전되고 있는 상황이다(황홍렬, 2013).

무엇보다도 교회적 차원에서 이주민 선교를 위한 선교적 과제는 인도주의적 복지개념을 복음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교의적 당위, 복음주의적 역할로서 예배와 선교를 위한 파급효과, 교회공동체를 전 방위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신앙적 자성의 시각에서 당면한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이라 보아 이상의 현실은 교계적 차원을 넘어 당면한 크리스천의 총체적 치부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4.1.3 소결 : 신앙적 함의

현재 선교적 차원에서 교회의 이주민에 대한 처우는 교의적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270여개의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선교공동체의 역할은 이러한 당위성에 비하여 극도의 형식적 또는 명목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이들 공동체의 약 50%가 2,000만원 미만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이 또한 개별 지교회 내지 개인후원의 자발적 출연(出捐)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 이를 증한다(황홍렬, 2013). 이에 덧붙여 개별 지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교계적 지원보다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또는 특정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이켜보기에 교계적 행태로서 그간 해외선교에 기울여왔던 지대한 관심과 열정은 다문화 사회에 있어 내부선교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여하히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순기능적인 시각에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있어 이방인을 대했던 태도와는 그 격을 달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장지향주의적 목회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 기독교계의 전형적인 단면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이는 교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선교정책적 차원에서 교회 내지 목회의 통렬한 반성과 그 결과로서 다문화사회를 향한 내부선교에로의 관심과 열정으로의 전향적 회귀를 함의한다.

IV. 맺음말

주지하듯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연대와 정체성은 애굽에서 형성되었다. 그들은 그곳에

서 다름 아닌 이방인으로서의 지위를 점했다. 구약의 율법적 견지에서 이방인에 대한 법적 보호는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당해 기록의 함축적 의미는 그들 또한 이방인이었으므로 이방인을 그들과 마찬가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하의 기록은 계약법전, 성결법전 및 신명기법전 등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일관된 법적 기조라 할 수 있다. 이는 오경(*Pentateuchos*)에 용해되어 있는 다종다양한 계열의 기사들이 이방인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출 22:21, 23:09)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34)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 10:19)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닌 현시대의 우리 또한 이러한 율례를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당해 의문에 오경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만이 이방인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치부했던 이방인만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이방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들이 고개 숙여 수용한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희년법(*law of jubilee*)을 통해 명하신 규례는 이를 다름없이 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

이러한 추상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 신앙의 선대로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음을 본다. 무엇보다도 당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 있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름없이 이방인이 아닐 수 없고,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이방인 됨과 다른 이방인의 지위를 동일하게 여겨 모든 이방인을 사랑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공의의 하나님의 추상같은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결정적 증거가 이방인 되신 예수님이셨음을 재삼 되짚어 둔다(마 25:35).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데다”(시 39:12, 119:19, 54, 146:9)

요컨대 이방인에 관한 신약적 함의 또한 앞선 구약의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사상적 기치로서 이 땅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공표한 대의로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크리스천[이방인]의 열개’로서 그 영원성을 구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the second is like it)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우리는 그간 형형색색의 무익한 담론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분하고 배척하며 도외시 하는 중에 그들에 대한 법적 지위의 차별과 편하에 골몰하고 있었음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겨진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서 ‘게르’(gēr)의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의 선택만이 남겨져 있을 따름이다. 그 선택으로부터 적용될 천국법의 법률효과는 ‘영벌’(eternal punishment)과 ‘영생’(eternal life)일 것임을 본고의 결론으로 되짚어 둔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2).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23-228.
- 김광열, (2013). 다문화가정(이방인)에 대한 성경적, 교리적 이해와 접근. 개혁논총, 26, 72.
- 김구원, (2013). 고대근동문명과 신화 비평. 개신논집, 13, 60-63.
- 김덕기, (2012). 빌립보서 2장 6-11절의 최근 연구동향. 장신논단, 44(1), 49.
- 김명현, (2012). 성경 속의 이주와 다문화. 다문화와 인간, 1(2), 82-83.
- 라이어 캐슬러, (2014).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약논단, 20(1), 12-30.
- 법무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9-28.
- 성명옥, (2012). 선한 영향력(룻기 01:16-17). 한국여성신학, 74, 89-96.
- 소형근, (2015). 원어를 알면 설교가 깊어져요 : 이방인 (1). 활천, 739(6), 120-121.
- 소형근, (2015). 원어를 알면 설교가 깊어져요 : 이방인 (2). 활천, 740(7), 126-127.
- 심종석, (2013). 무역과 전쟁, 그 공존의 역사. 서울: 삼영사, 26-33, 314-331.
- 심종석, (2011). 앗수르의 역사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계획과 현 시대를 향하신 계시적 함의. 로고스경영연구, 9(1), 61.
- 여성가족부, (2014).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다문화정책과.
- 오민수, (2013). 구약성경으로 재조명해 본 다문화 담론. 한국사회복지교육, 21,
- 유혜민, (20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주민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08-112.
- 이승호, (2014). 마태복음의 선교적 관점. 신학과 목회, 42, 149-170.
- 이종근, (2008).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우르-남무 법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2, 1-21.
- 전경근, (2015).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146-2, 310.
- 정중호, (2015).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성경적 공동체. 로고스경영연구, 13(1), 97-116.
- 정중호, (2004).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3(1), 512-513.
- 정중호, (2012). 다문화 사회를 위한 귀환이주 전승. 구약논단, 18(4), 178-204.
- 조신광, (1967). 함무라비법전의 연원. 서양사학회 대회기, 98-104.
- 조의설, (1976). A History of the World, 서울: 정한출판사, 129-134.
- 차영길, (1995). 로마경제의 노예대리인(1) : 빌리쿠스(vilicus). 부산사학, 29, 139-153.
- 현승중, (2004). 로마법, 서울: 법문사, 346-358.
- Boeckel, B. (2014). Doing form Criticism with Slippery Genres a Review of Treaty, Law and Covenant, *Hebrew Studies*, 55(1), 411-430.
- Bradley, K. (2012). *Spartacus (d. 71 BCE)*. The Encyclopedia of War.
- Bury, J. D. & Russell M. (1975). *A History of Greece to the Death of Alexander the Great*.

- St. Martin's Press.
- Espinoza, J. J. H. (2012). *Damnum Iniuria Datum*. *Revista de Derecho*, 3, 205-220.
- Gallagher, W. (2014). Platonic and Attic Laws on Slavery. *The Compass*, Issue, 33.
- Gowar, C. & Visser, C. J. (2013). Actio Iniuriarum-One Action, But Only One Iniuria? Le Roux v. Dey 2011 3 SA 274 (CC). *Journal of Contemporary Roman-Dutch Law*, 76, 490-498.
- Houston, F. S. (2015). *You Shall Love the Stranger as Yourself: The Bible, Refugees and Asylum*, Routledge.
- Kadri, A. (2015). Ancient Mashriq : From Cradle of Civilisation to Disaster Zone. *MEI Insight*, 121,
- King, L. W. (2014). *The code of Hammurabi*. Netlancers Inc.
- Luhmann, N. (2012). System Theory in the Study of Legal Development. *Matters of Scale*, 167,
- Mallat, C. & Revkin, M. (2013). Middle Eastern Law.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9, 44-46.
- Mark, A. A. (2012). *He Loves the Immigrant: Deuteronomy's Theological and Social Vision for the 17*,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Biblical Studies. Asbury Theological Seminary, Abstract.
- Mayshar, J. (2014). Who Was the Toshav?.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3(2), 225, 1-9.
- Mcintosh, J. R. (2005). *Ancient Mesopotamia*. ABC-CLIO Inc.
- Prior, J. (2012). I Departed Full, and the Lord has Brought Me Home Empty(Ruth 1: 21): A Transforming Word from Failed Migrants. *East Asian Pastoral Review*, 49(4), 394-407.
- Zehnder, M. (2015). Achenbach, Reinhard/Albertz, Rainer/Wöhrle, Jakob (Hg): The Foreigner and the Law. *Orientalistische Literaturzeitung*, 110(1), 19-24.

A Doctrinal Study on the Desirable Christian' Attitude toward on Multicultural Society

Joong Ho Chong* · Chong Seok Shim**

〈Abstract〉

This is the paper in order to infer the answer, at the level of religious guidance, on the desirous attitudes of christians towards a multicultural society from the prism of a philanthropic idea as the identity of christians of today living as the last generation, on the condition that Israel and foreigners had each other's different and opposing positions in appearance at the biblical perspective but ultimately they were mutually in a constant functional relation, for example, 'as a separately but unitedly religious family'. This paper is organized into three parts: the implied meaning of the fundamental and functional foreigners resulted from combining the biblical and legal historic points of views of foreigners respectively at the old testament era, new testament times and modern times, is divided into receptive or genealogical, punitive or exclusive, and religious perspectives. Hereinafter, this paper intended to provide a small clue, in establishing the desirous religious signpost of christians of today correctly who live under the influence of a multicultural society, and furthermore, in carving the periodic mission repeatedly on the neighborly love as the most important commandment told by Jesus. As a result, this paper put a stress on a forward looking regression of a church or a ministry as its implication at the level of missionary policy as well as at the level of religious society on the typical aspect of a christian society pursuing the growth-oriented ministry, by paying attention to a great gap between the domestic mission work with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oversea missionary work because the latter has been focused on with huge interest and passion at the level of church, and also by considering that such behavioral pattern was different, in terms of attitude and standing towards foreigners, from that of the old testament era and new testament times, which had a functional perspective.

Key words : Multicultural Society, Foreigner, Religious Family, Old Testament Era, New Testament Times, Functional Perspective.

* Professor, Dep't. of Christi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joongho@kmu.ac.kr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oreign Trade, Daegu University, cyrus@daegu.ac.kr

Received: . . . , 1st Revised: . . . , Accepted: . . .